**기업명칭 분쟁처리 임사방법(의견수렴안)**

**제1장 총칙**

제1조 [입법목적] 기업명칭 분쟁을 합법적으로 민첩하게 처리하고 기업명칭에 따른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기업명칭 등기관리 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기업명칭등기 관리규정> 등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본개념] 본 방법에서 기업명칭 분쟁으로 지칭하는 것은 기업이 타인의 자가 신고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등기 등록된 기업명칭과 해당 기업의 명칭이 유사하여, 해당 기업명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정황을 의미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신청인은 기업명칭 분쟁을 제기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피신청인은 기업명칭 분쟁을 제기 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3조 [관할권한]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기업명칭 분쟁을 책임지고 처리하고, 행정판결을 내린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등기 등록 소재지가 동일한 성(省)급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기업명칭 분쟁의 구체적 관할방법은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제정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등기 등록 소재지가 동일한 성(省)급 관할범위에 있지 않는 경우, 기업명칭 분쟁은 피신청인 등록 등기 소재지의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관할하는 기업명칭 분쟁을 지정된 하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내부업무분담] 기업명칭 분쟁처리는 시장감독관리부서 등기등록기구가 책임지고 처리하며, 법제기구가 처리결정에 대한 합법성 심사를 진행한다. 소재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분쟁처리기구와 인원의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기본원칙] 기업명칭 분쟁은 우선권 보호원칙, 신의성실 원칙, 공정성과 효율성 양립 등 원칙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제2장 명칭분쟁의 신청 및 수리**

제6조 [당사자 조건] 기업명칭 분쟁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이어야 한다.

제7조 [신청자료] 신청인이 기업명칭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1 신청서

7.2 증거자료

7.3 기타 관련 자료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서명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현황, 명칭 분쟁 사실과 이유, 청구사항 등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위탁 대리할 경우에는 위탁서와 피위탁인의 자격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수리기한]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은 신청서를 수취한 날부터 5영업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본 방법의 유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통지서를 수취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통지한다.

제9조 [수리결정]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이 심사하여 기업명칭 분쟁을 수리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10조 [불수리] 기업명칭 분쟁 신청에 다음 중 하나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10.1 신청내용이 기업명칭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2 분쟁명칭이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3 신청인이 분쟁이 있는 기업명칭의 권리인이 아닌 경우

10.4 피신청인이 직권 말소되거나 등기 말소한 경우

10.5 인민법인이 분쟁이 있는 명칭을 심리 중이거나 이미 판결을 내린 경우

10.6 신청인이 조정을 통해 합의하였거나 자발적으로 분쟁신청의 철회를 신청한 후, 다시 같은 이유로 기업명칭 분쟁을 신청하는 경우

10.7 신청인이 보완하여 제출한 관련 자료가 본 방법의 유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0.8 기타 정황

제11조 [답변요구]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은 수리결정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신청서와 관련 자료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한다. 피신청인은 수리일로부터 15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은 답변서를 수취하고 5영업일 내에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피신청인이 기한을 넘겨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의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2조 [보충증거] 당사자가 신청 또는 답변을 제출한 후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이를 밝히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의 보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 생성되거나 당사인이 기타 정당한 이유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기업등기기관이 증거를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대질한 후 채택할 수 있다.

**제3장 명칭 분쟁의 조정**

제13조 [분쟁조정]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은 기업명칭 분쟁 자료를 수리한 후, 기업명칭 분쟁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합의된 경우에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에서 행정판결을 내린다.

제14조 [조정협의] 조정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1.1 당사자의 명칭 및 통일사회신용코드,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성명, 주소 등 기본현황

11.2 분쟁의 주요 사실

11.3 인정된 사실과 증거

11.4 조정 합의 내용 및 기타 관련 사항

조정합의서에는 당사자 및 조정인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조정기한] 기업등기기관은 조정합의서 효력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조정합의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즉시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장 명칭 분쟁의 심사 및 처리**

제16조 [심사원칙]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은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에게 문의하거나 유관 단위 및 개인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제17조 [실태조사] 기업명칭 분쟁 조정 또는 실태조사는 2인 이상의 실무자가 진행하고, 질의응답 내용도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는 질의응답 기록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고,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당사자가 질의응답 기록지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할 경우 질의응답 기록지에 주석을 달아 표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입증 책임] 기업명칭 분쟁 쌍방 당사자는 각자 제출한 사실과 이유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고, 적시에 처리를 담당하는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에 유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 [인정 정황] 다음 중 하나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한 기업명칭은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19.1 분쟁이 야기된 기업명칭이 자진 신고한 등기에 속하고, 신청인의 기업명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리스크 안내에서 명확히 고지한 경우

19.2 이미 등기된 기업명칭이 사용 중에 대중들에게 혼동과 오해를 일으켜 기업명칭 권리를 침해한 경우

19.3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법에 의거 이미 등기된 기업명칭이 타인의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한 경우

제20조 [심사 중단] 명칭 권리와 관련된 확정은 반드시 인민법원이 현재 심리 중이거나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또다른 안건의 결과를 근거로 삼아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중단 원인이 해소된 후, 분쟁 쌍방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심사 절차가 재개될 경우 처리시간은 다시 계산한다.

기업명칭 분쟁에 관한 심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은 분쟁 쌍방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7영업일 내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21조 [심사 종료] 다음 중 하나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은 심사를 종료한다.

21.1 신청인이 명칭 분쟁 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쟁 쌍방이 조정 협의에 도달한 경우

21.2 명칭 분쟁 일방 또는 쌍방이 이미 명칭을 변경하였거나 말소 등기를 처리한 경우

21.3 신청인이 계속하여 대중들에게 혼동과 오인을 일으키는 피분쟁 기업명칭의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1.4 본 방법 제10조에 규정된 불수리 상황이 발생한 경우

21.5 기타 정황

기업명칭 분쟁에 대한 심사를 종료할 경우,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은 분쟁 쌍방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7영업일 내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22조 [행정판결]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은 명칭분쟁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방법 제19조에 규정된 정황에 해당할 경우, 기업명칭 분쟁 처리기관은 법에 의거 인정한 기업명칭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이유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에 의거 기각한다. 기업명칭 분쟁 행정결정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2.1 당사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성명, 통일사회신용코드 등 기본현황

22.2 분쟁의 주요 사실

22.3 인정된 사실과 증거

22.4 적용한 법률, 법규 등 근거

22.5 처리결정서의 내용

기업등기기관은 7영업일 내, 처리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5장 명칭 분쟁처리 결정의 집행**

제23조 [구제 절차] 당사자가 기업명칭 분쟁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행정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기업명칭 분쟁 처리 결정은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제24조 [명칭 변경] 본 방법 제19조에 의거 인정된 기업명칭의 사용을 중지해야 할 경우, 기업은 기업등기기관의 처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 기업명칭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기업이 명칭 변경등기를 처리하기 전, 기업등기기관은 통일사회신용코드로 그 명칭을 대체하고,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한다.

제25조 [신용 공시] 기한을 넘겨 명칭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이 해당 기업을 경영 비정상 명단에 포함시키고, 전자 영업집조 상 명칭을 ‘등기기관이 인정한 \*\*기업명칭은 사용이 중지됨’으로 대체하고, 국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한다. 명칭 변경등기가 완료된 후, 기업등기기관은 법에 의거 해당 기업을 경영 비정상 명단에서 제외하고, 변경 후의 명칭으로 공시하며 주석을 제거한다.

**제6장 부칙**

제26조 [참고 집행]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농민합작사의 명칭 분쟁처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27조 [조항 해석] 본 방법은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안건의 조사, 기간의 계산과 문서의 송달은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 유관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28조 [시행일] 본 방법은 2021년 월 일부터 실시한다. 시행과정 중 법률법규에 새로운 규정이 생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